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8. 3.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그간의 핀테크 정책 추진현황	4
1. 핀테크 정책 추진경과	4
2. 국내외 핀테크 현황	5
3. 평 가	7
III.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8
IV. 핀테크 활성화 추진과제	9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9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16
3. 핀테크 시장 확대	19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25
V. 기대효과	28
<별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30

I. 추진 배경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 금융은 4차산업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 속도가 빨라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중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서 금융의 파괴적 변화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부터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육성을 추진
 - 적극적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시장참여자 증가 등 핀테크 발전의 기반을 마련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5.1.27) 주요내용 >

- ① (규제 패러다임 전환) IT·금융 융합을 활성화하도록 규제의 틀을 전환
- ②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금융제도 개선
- ③ (핀테크 산업 육성) 자금조달 지원 및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
- ④ (소비자 보호)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보안 강화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
 - **(시장참여 확산)** 기존 금융회사 혁신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지 못함
 - **(서비스 확대)**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이 아직 부족하므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1. 금융서비스의 변화

① 금융서비스 제공의 탈중개화

- IC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고, 기존 중개자 역할을 대체

* 크라우드펀딩, P2P 등은 사업아이템 선정단계부터 투자자, 소비자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 (금융의 수요주도적(on-demand) 경제화)

- 포괄적 융합을 통해 IT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금융업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 압력이 가중

*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P2P, 크라우드펀딩 등의 등장

** 핀테크는 IT와 금융의 경계를, O2O기반 금융판매망은 금융업권간 경계를 약화

② 금융서비스 기반 기술 분업화

-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기능별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분화가 촉진

- 특히, 오픈 API가 확산*되어 은행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기능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 심화

* Citi 은행의 Mobile Challenge: 개발자들에게 은행 계좌조회, 입출금, 주식주문 등 오픈 API 제공 → 핀테크 기업들이 기능별 서비스 개발

③ 금융서비스의 고도화

- 금융분야에서 기존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소위 Social data) 활용능력이 매우 중요

- IoT기술을 통한 데이터 축적,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美 손해보험사 Progressive: 차량운행 기록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해 운행정보(운전시간, 습관, 급제동)를 기록하고 이를 반영해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2. 금융산업의 변화

1 (금융회사 측면)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

- (은행산업)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P2P 대출 등에 특화된 핀테크 서비스 성장으로 소매금융 등 전통적 수익기반을 잠식*
 - * 맥킨지: '25년 기존 소비자금융 부문 이익의 60%까지 핀테크에 의해 감소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금융 > 지급결제 > 자산관리 >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큼)
-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가운데, 핀테크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
- (보험산업)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인슈테크 확산으로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활성화
 - 인터넷 전용 보험사 성장,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셜 보험 브로커 출현* 등 보험산업의 경쟁 심화
 - * 英 BBM: 특수한 보험수요를 가진 사람을 모아 보험사와 계약협상 대행
- (금융투자업) 클라우드펀딩 등 창업기업 자금조달 플랫폼 다변화, 블록체인을 통한 증권거래, 로보어드바이저 발전
 - 전통적인 투자중개 및 자문업 약화, 거래소 기능 약화

2 (소비자 측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
- 다만,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증가, 사이버위협 확대로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도 증가

3 (비즈니스 모델 측면) 금융플랫폼 선점 경쟁 가속화

- 금융산업 경쟁력 요인이 물적기반(점포 등)·브랜드 중심에서 신기술 융합·네트워크 기반의 금융플랫폼 선점으로 이동
- 금융시장 구조가 수요 주도(Demand-driven)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자 선호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선점이 중요

II. 그간의 핀테크 정책 추진현황

1. 핀테크 정책 추진 경과

① (핀테크시장 활성화) 진입장벽 완화로 핀테크 기업의 시장 참여가 확대* 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

* 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 완화(5~10억원→3억원), 등록절차 간소화
⇒ 전자금융업자 등록(개): ('14) 67 → ('15) 83 → ('16) 97 → ('17) 104

** (케이뱅크, '17.4월) 고객 62만명, 수신액 1조 587억, 여신액 8,138억원

(카카오뱅크, '17.7월) 고객 484만명, 수신액 4조 7406억, 여신액 4조 4796억

② (핀테크서비스 확대) 공인인증서·OTP 사용의무 폐지 등 이후 간편결제·송금서비스 다수 출시, 로보어드바이저**도 서비스 개시

* 간편결제 서비스 39종, 간편송금 서비스 14종 출시

** NH증권 등 8개사가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및 무료추천 서비스 출시

○ 클라우드펀딩('16.1월)을 통해 274개 기업이 452억원('17년말) 조달

○ 금융ICT 플랫폼 확산* 등으로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출현을 유도

*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16.8월 구축)을 통해 19개 서비스 상용화

○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추진**

* 은행연합회·은행(16개社), 금투협회·금투회사(25개社), 생보협회·생보사(20개社)

** 금투업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를 개시(17.10월말)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15.3월)하여 핀테크기업 상담(법률·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연계 및 해외진출기회 제공

○ 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으로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들의 사업 활성화

*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1조 3,169억원 여신 지원('17년말)

2. 국내외 핀테크 현황

1 해외 핀테크 현황

- 핀테크 산업은 투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英·美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 중국 등의 핀테크 투자 확대 등 경쟁 가속화

* 글로벌 투자 규모는 '10년 18억 달러에서 '20년 461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 추정(accenture)

- (미국) 실리콘밸리의 IT기술과 월가의 뛰어난 금융인프라를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

* 미국 핀테크 투자(VC기준)는 '17년중 약 71억달러로 세계 1위(Innovate Finance, 2017)

-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 중심으로 성장

* '08년~'14년간 런던의 핀테크 관련 누적투자 성장률은 74%로 가장 빠르게 성장(accenture)

- (중국)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열악한 기존 금융인프라를 핀테크로 대체하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

* '17년 핀테크 투자규모는 약 16억달러로, 미국(71억달러), 영국(18억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

2 국내 핀테크 현황

-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선도국인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인 중국에 비해서도 더딘 것으로 평가

- 온라인 이용자중 핀테크 서비스 이용 비중을 나타내는 핀테크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로 전세계 평균(33%)을 하회



*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7
(20개국 22,000명 대상 온라인 인터뷰 실시)

- 국제적으로 주목할만한 핀테크 기업이 없는 실정

<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2개 핀테크 기업 >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기업: 미국 6개 중국 3개 우리나라 없음

* 출처: 포춘지

** 2017 100대 핀테크 기업 : 미국(19개),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우리나라(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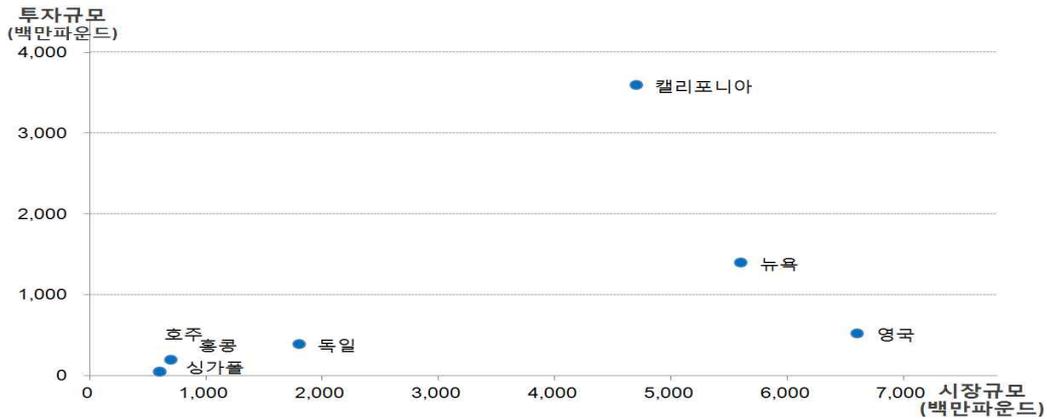
< 100대 핀테크 기업 >



* 출처: KPMG

1. 주요국 핀테크 시장 및 투자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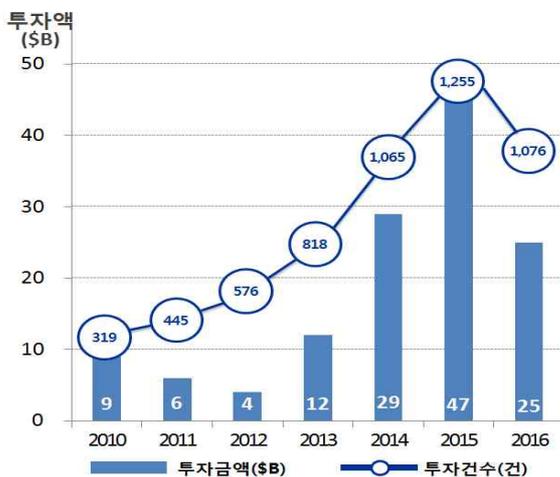
□ 英 재무부의 요청으로 언스트영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핀테크 시장규모는 영국(66억 £, 7.7조원)이, 투자규모는 美 캘리포니아 지역(36억 £, 4.2조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환율: 2015.9.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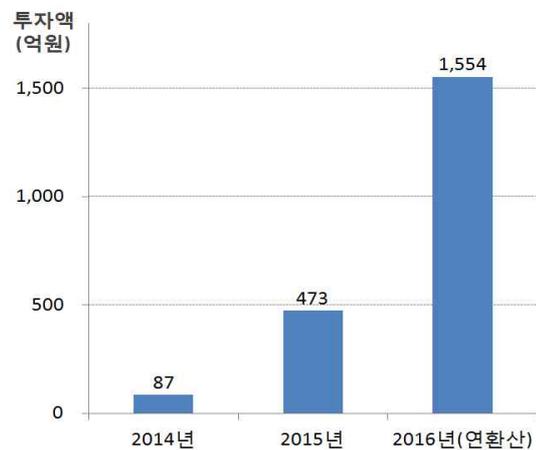
* 출처: EY analysis(UK FinTech: on the cutting edge, 2016.2)

2. 핀테크 투자규모 증가 추이

□ KPMG에 따르면, '16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250억 달러
 ○ 우리나라의 경우 '16년 상반기 핀테크 기업 투자규모는 777억원, 연환산 1,554억원으로 '14년 87억원 대비 약 18배 증가



* 출처: KPMG International(2017.2)



* 출처: 금융감독원(2016.11)

3. 평 가

<핀테크 기업 :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여건 미흡(Tech → Fin)>

①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송금, 보안·인증에 집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규제가 기술발전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해 혁신시도가 어려움
→ 핀테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기술발전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혁신 여건 조성 필요

② 핀테크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취약

→ 핀테크 기업의 창업·육성·성장 지원체계, 사업화·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 핀테크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

<기존 금융회사 : 신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도입 제약(Fin → Tech)>

③ 엄격한 규제에 따른 금융업권의 보수적 행태로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는 변화에 더딤

→ 자산관리 서비스, 인슈테크, 고객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허용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고도화 필요

<핀테크 시장 확대 : 금융·신기술 융합 미진(Fin ↔ Tech)>

④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이 미진한 가운데, 기술 수준도 해외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

* 핀테크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반적 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 비해 다소 미흡 (핀테크 기업 설문조사(KISA, '16.12월): 약간 미흡 42%, 세계 최고와 유사 36%)

→ 빅데이터·블록체인 활용 활성화 등 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필요

<핀테크 혁신 보완 : 신기술·서비스의 위협 우려(Fin ↔ Tech)>

⑤ 핀테크 혁신으로 새로운 IT리스크가 생겨나고 있으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도 진화중

→ 신기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혁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III.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



4대 분야 14대 추진과제

I.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 지원

- | | |
|----------------------|------------------|
|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 ②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
| ③ 투자 · R&D · 해외진출 지원 | ④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

II.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 | |
|----------------|------------|
| ①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 ② 인슈테크 활성화 |
|----------------|------------|

III. 핀테크 시장 확대

- | | |
|----------------|---------------|
| ①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 ②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 ③ 오픈 API 활성화 | ④ 블록체인 기술 활용 |
| ⑤ 클라우드 활성화 | ⑥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IV.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 | |
|----------------|-----------|
| ① 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 ② 레그테크 활용 |
|----------------|-----------|

IV. 핀테크 활성화 추진과제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혁신서비스의 심사·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테스트기간 중 감독 및 소비자보호,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 법 제정 이전에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

< 참고 : 해외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17년말 기준) >

- (영국) '15.11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 발표
 - '16.7월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 **1차~3차 테스트 진행**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 운영중**
 - 투자자문 등 특정영역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별도 신청없이도 테스트**할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를 '16.12월 추가 도입
- (싱가포르) '16.6월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 라인'을 마련 (현재 **1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완료)

【투자·해외진출·R&D 지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해외진출·R&D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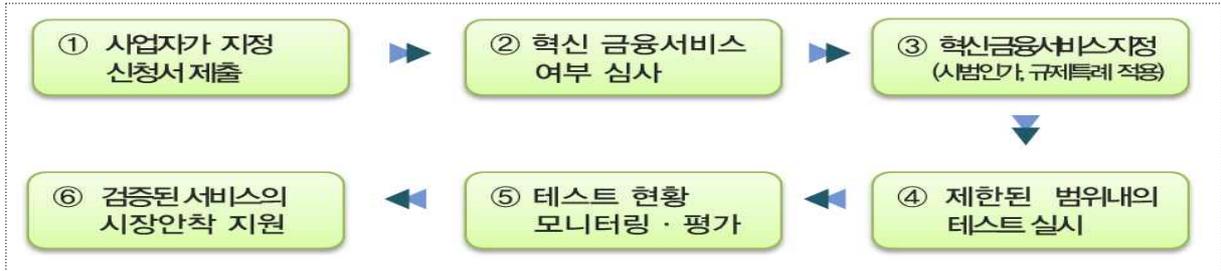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 핀테크 지원센터 조직·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혁신금융서비스 실험 절차 >



1] **(지정 신청)**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

*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2] **(심사·지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평가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

* 구성: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등(15인 이내)

○ ① 서비스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③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④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3] **(특례 적용)**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지정 + 이후 2년 연장 가능)

○ (시범인가) 혁신금융사업자는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등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

○ (규제특례) 지정받은 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받은 금융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과 같은 금융의 핵심원칙은 유지

④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시장·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중간·최종평가 실시**

- 소비자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시정,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테스트베드 중지명령, 변경조치 시행

⑤ **(소비자보호)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
토록 하고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

- 이용자의 범위 제한, 거래위험 고지 및 분쟁처리절차 마련과, 사업자의 자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이행 보장장치 강구

⑥ **(시장안착 지원) 지정기간 종료시 특별법상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나,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 금융혁신·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 권고
- 사업자에게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배타적 운영권 부여

⑦ **기타 :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등 도입**

- (지정대리인제도)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신속확인제도)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

※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3.6일 민병두의원 등 45인 발의)에 대한 국회 입법절차 진행중

(2)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 법 제정 이전에도 위탁테스트 · 지정대리인 본격 운영

□ (테스트베드 본격시행)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 본격 시행('18)

①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금융법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이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청시 적극 회신(30일 이내)

- 新서비스의 테스트를 제약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테스트 전용 비조치의견서 신청 중점 관리

* (예) 여신협회 보안성 검증을 받은 경우 모바일앱에 대해 여전법상 카드결제 단말기 인증 적용 등 비조치의견서 4건 접수 처리('18.3월 기준)

② 위탁테스트 민간협약체* 중심으로 1차 위탁테스트** 운영 및 그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후속 위탁테스트 지속 추진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개 금융회사로 구성

** 1차 위탁테스트 신청건수(17건) 중 8개를 선별하여 테스트 진행중('17.10.25~)

- 핀테크기업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협약체에서 검증 및 테스트 일정을 상호 협의한 후 테스트 진행

③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대리인을 심사·선정하는 등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18.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위 구성, 실무단 구성,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수요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

(3) 투자·해외진출·R&D 지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및 R&D 지원

① (투자 지원) 핀테크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 조성·운영('18~)

- 성장사다리펀드가 금년 중 조성하는 신규 하위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18)
 - 펀드재산 일부(예: 100~150억원 규모)를 핀테크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초과달성시 펀드운용사에 성과보수 등 인센티브 제공
- 핀테크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예: 투자제한 해소, 민간투자펀드 등)
- ※ 핀테크·IT 분야 정책금융지원(대출·구매) 지속 추진 : '18 ~ '19년 2조원 규모('17년 13,169억원 집행)

② (해외진출 지원)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 추진

- 해외 데모테이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 마케팅·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등과 공동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
- 동남아 지역 금융당국과의 MOU체결 등 핀테크 협력 확대
 - * 기존 핀테크 MOU체결 : 영국 FCA('16.7월), 싱가포르 MAS('16.10월)

③ (R&D 지원) 과기부와 공동으로 금융신산업 R&D 지원 추진('18)

- 과기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 사업 추진('18, 금융위·과기부 공동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등 핀테크 R&D 사업 추진)
 - * 사업명 : 블록체인 융합기술 (총 6개 과제, 45억원) / 현재 사업공고중(2.12~3.15)

(4)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 핀테크지원센터 조직기능 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

1] (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지원기관으로서 핀테크지원센터의 (‘17.12월 법인화) 조직과 기능을 확대·강화(예산지원 추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핀테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추진

- 영국 Level39*와 같은 핀테크 지원기관으로서의 교육·투자·해외진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전문인력 확보**(30명 내외)

* 핀테크 기업에게 멘토링 프로그램, 펀딩 연계,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지원하는 영국의 대표 핀테크 육성기관(Accelerator)

**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전담창구, 해외 기업설명회 개최 등

-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

2] (민간협의체) 핀테크지원센터-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협의체* 활성화(‘18)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개 금융회사로 구성

-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수요가 있는 **금융회사 매칭**으로 핀테크 기업 창업·육성을 지원하고, 민간 건의사항을 수렴

-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③ **(테크자문단) 테크자문단**(TAG, Tech Advisory Group, 10~20명 내외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핀테크 정책수립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과 기술의 소통을 강화(지속)

*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新기술 분야별 자문위원을 운영

- 해외동향 공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핀테크 시장과의 핵심 소통 채널로 상시 운영

④ **(금융위내 CFO지정)**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핀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

- '민간협의체', '테크자문단' 등의 핀테크지원체계를 조정·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거래 확대
- 핀테크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추진
- 클라우드펀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인슈테크 활성화】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분야의 혁신을 촉진
-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

(1)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자금조달 활성화

- 1 (비대면 거래 확대·지원) 비대면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거래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
 - 투자일임계약시 설명의무 이행에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허용
 -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비대면 허용방식(영상통화)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개발·지원(코스콤)
 -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 검토
 - 온라인거래를 구현한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 후 허용여부 결정

②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17.5월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RA) 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 추진

- Track record가 축적된 RA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 시 영상 통화 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도 허용

* 자본금 40억원을 갖춘 업체가 2년 이상 track record가 축적된 RA 활용

- 시장의 테스트베드 수요 등을 감안하여 '16.9월부터 실시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

※ 1차('16.9~'17.4월)·2차('17.4~'17.12월) 테스트베드에 이어 3차 테스트베드('18.1~) 진행 중

③ **(클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
('18.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도 클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 현재 부동산업, 도박업, 음식업, 골프장, 스키장, 아미용업 등은 클라우드펀딩 이용 제한

-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 한도를 2배 확대*

* 1년간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

(2) 인슈테크 활성화

◇ IoT, AI 등 新기술과 보험의 융복합을 촉진

① (혁신 보험상품 개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18)

○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 출시('18.상)

- 앱(App),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출시

* 건강검진 수치, 금연성공 여부, 예방접종 여부, 숙면측정, 식습관 등

②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자율주행 관련 첨단안전장치 부착시 보험료 할인 및 기술발전에 따라 할인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 금융권 공동연구)

* (예시)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차량에 보험료 할인 제공 등

③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온라인 소액 보험 판매 허용('18.상,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예시) ① 전자제품 구입 &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 가입 ② 자전거등산용품 구입 & 레저보험 가입 ③ 세그웨이 구입 & 세그웨이 이용중 상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가입

④ (新기술 활용) 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온라인 보험 가입, 보험금 자동 청구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장기)

3 핀테크 시장 확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금융권 표본DB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
-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합리화

【오픈 API 활성화】

- 금융권 공동 오픈 API를 지속 개선하고 금융회사 개별 오픈 API도 병행 추진

【블록체인 기술 활용】

-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전자투표 등 금융권 활용분야 확대
-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시장 영향 등을 사전에 검증

【클라우드 활성화】

- 규제완화 성과, 클라우드 기술수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 혁신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 정책·제도 개편

(1)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금융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 마련

1] (계좌 간편결제 활성화)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18~'19)

○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토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

* 물품대금 결제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

** 토스(전금업자)는 서울·제주도 등에서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17.6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앱투앱 간편결제 개발 중('18.7월 예정)

○ 새로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추진

○ 모바일 등을 활용한 新결제업체들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기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중개*하는 방식의 경우 가맹점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 허용(유권해석)

* 카드수수료(약 2%)에 PG수수료 등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가중

2] (규제 개선) 새로운 기술·결제방식 도입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모바일 결제 부문의 경쟁을 촉진

3]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중소(3~5억) 규모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를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추진('19)

* 온라인 카드거래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됨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아 우대수수료를 미적용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은 추후 발표 예정

(2)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기 발표 (3.19)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 1 [1] **(빅데이터 활성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
 - 금융정보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업체를 지원
 - CB사·카드사의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허용
 - 데이터 공유·활용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금융-공공기관 간 긍정적 정보공유(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등도 확대
- 2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
 - 비금융정보 특화 CB 도입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
- 3 [3] **(정보동의 실질화 및 금융권 정보관리 강화)** 현행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실질화·합리화('알고하는 동의')하여, 정보주체를 내실 있게 보호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 활성화
 - 정보주체가 데이터 활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결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도입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을 내실화하고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3) 오픈 API 활성화

◇ 금융권 공동 및 개별 오픈API 활성화 병행 추진

① (개별 오픈API)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민간TF*를 구성하고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 마련(18.하, 민간TF)

*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예정)인 금융회사(농협·하나·신한 등)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오픈플랫폼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테스트 과정에 있는 혁신서비스의 보안성 심사 강화*

* 모바일 앱·웹 취약점 점검, 핀테크 기업 점검기준 마련 및 실사 점검 등 실시

○ 금융회사 핀테크 랩 확대 운영(은행6·보험1 → 금투·보험·카드 포함), 오픈API 제공 분야 확대 (은행·금투 → 보험·카드 포함) 등 개별 수요에 따라 오픈 API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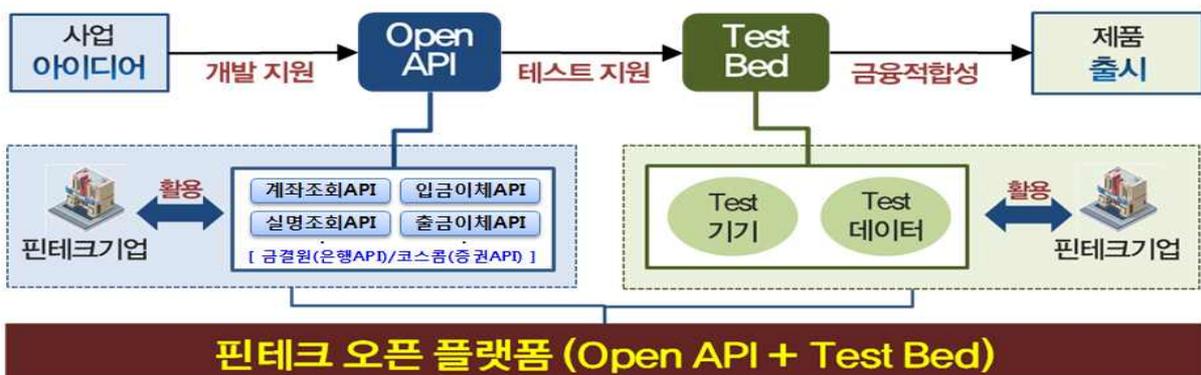
② (공동 오픈API)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 유도** (18, 금결원·코스콤)

○ 오픈플랫폼 운영성과를 토대로 수수료 부담 완화를 검토

* (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등 5개 API 제공중 → 송금인 정보조회 추가 (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95개 API 제공중 → 주문·본인인증 API 추가

** 은행권 : 15개 은행 참가, 금투업권 : 18개 증권사 참가(17년말 기준)

< 참고 :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념도 >



(4) 블록체인 기술 활용

◇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 검토

① (활용분야 확대)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18.하~)

-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17.10월)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 금융투자·은행·보험 등 업권별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예탁결제원), 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 검토

②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분산,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금융보안원, 코스콤) 및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18.하)

* 서비스 출시 전에 서비스의 기능효과, 금융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

- (인프라 지원)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
- (사전 검증) 블록체인 적용 시 금융권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념 검증(적용가능성 여부)을 지원

* 금융권 블록체인간 연동 및 금융권 블록체인 표준화 관련 과제 등에 대한 기술검증

③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개인정보 파기의무 등 블록체인 활용시 상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와 협의·검토('19~)

* 블록체인에 한번 저장된 거래내역은 기술 특성상 파기 및 삭제가 불가

(5) 클라우드 활성화

◇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클라우드 이용확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객정보와 관련된 중요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핀테크서비스 테스트 실시('18.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19.규제 샌드박스 시행)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

-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검토

(6) 전자금융업 제도 · 산업 개편

◇ 혁신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 정책 · 제도 개편

- ① **(핀테크 제도 개선)** 새로운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출현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개편방안 검토('18년)

* 해외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및 기반기술(예 :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등에 대한 제도 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금융업 제도 개편방안 제시

- ② **(건전성 제고)** 전자금융업자 부실화시 이용자 및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 수단을 확보('19, 전자금융법 개정)

* 현행 전금법(\$42②)은 금융위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지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수단은 없음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업무정지·등록취소 등 감독 수단을 제도화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혁신기술 보안대응】

- 혁신기술에 대해 단계별 보안진단 및 보안 컨설팅 지원
- 해킹 등 대응을 위한 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도화

【레그테크 활용】

- 레그테크 시범사업을 통해 활용분야를 확대

(1) 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 혁신기술 보안지원 체계를 통해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IT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전산보안 대응체계 강화

- 1] (혁신기술 보안지원) AI, IoT,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대한 보안지원 강화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18)
 -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 지원체계 구축(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 혁신으로 발생하는 IT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방안 강구

② **(보조업자 관리 강화)** 은행VAN*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권 공동점검 시스템 구축·운영(‘18.하, 시스템 구축)

*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대신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하는 사업자

- 금융권 공동점검의 효과적 수행·관리를 위해 보조업자 현황, 점검자료 취합·검증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금융보안원)

③ **(정보공유 시스템)** 사이버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18.하, 시스템 구축)

-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금융회사·금융보안원간 침해정보* 공유체계를 자동화하여 침해위협정보를 즉시 공유

* 공격자 IP주소, 악성코드 유포지 정보 등

- 금융보안원이 운영중인 이상금융거래(금융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공유대상*을 저축은행까지 확대

*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70여개사가 공유중

④ **(데이터 보호)** 3중 데이터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EMP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에 대응(‘18.하,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 추진(한국은행)

*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 마련 등 세부계획 수립(‘18.상)

- 전산센터나 백업시설에 EMP 차폐시설을 구축하여 EMP를 원천 차단

(2) 레그테크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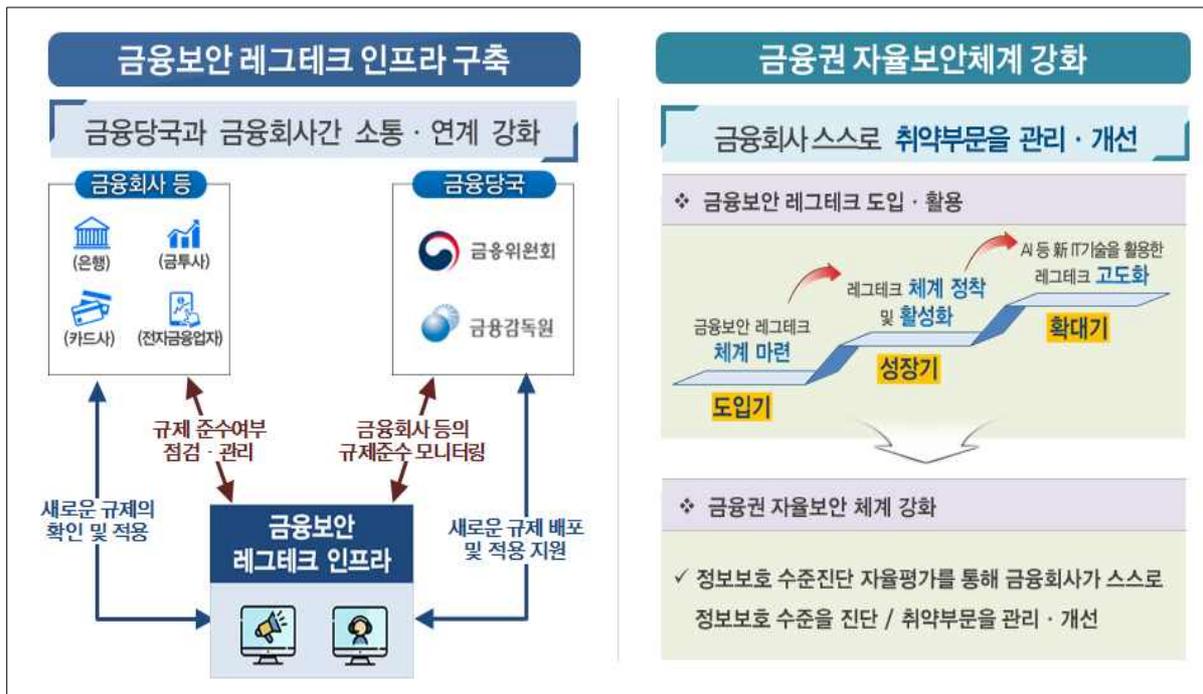
◇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자율규제체계 확립

- ① (레그테크 활성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게 규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8.하, 금감원·금보원)

* 레그테크 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관련 법규,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등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 API 구축

- ② (금융보안 레그테크) 금융회사 보안수준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 실시('18.하, 금감원·금보원)

* 금융회사는 자율보안평가에 따른 보안규제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모니터링에 활용



- ③ (신기술 활용 시장감시)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18.하, 거래소)

V. 기대효과



①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려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기업이 나타나면 **우리 금융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 규제부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핀테크스타트업이 하나, 둘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감
- 특히,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들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

② 내 손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
-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줄고, 금융비용도 절감
-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로 국민들의 여윗돈도 증가

* (예)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보험료 할인, 금리혜택 제공, 자산관리 등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③ 금융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서로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개선**됩니다.

○ 핀테크(FinTech), 테크핀(TechFin)*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와서 기존 금융회사와 서로 경쟁·협력하며 금융효율성을 제고

*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1. 2018년 상반기 주요 추진과제

추진 과제	조치계획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혁신 보험상품 출시
· 전자금융업자 소액 간단보험 판매 허용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조직 강화	자체인력 충원 시작(지속)
·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강화	민간협의체 강화
· 테크자문단 구성·운영	테크자문단 운영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3차 테스트베드 실시
·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운영규칙 제정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
·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

2.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추진 과제	조치계획
·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	금투업규정개정
· 클라우드펀딩 규제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19.1월 시행 목표)
·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제도적 여건 마련	세부 추진방안 마련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신정원에 시스템 구축
·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 혁신기술 보안지원 및 안전성 점검 강화	신기술 보안지원 및 안전성 점검 실시

·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비조치의견서 발급
· 위탁테스트 지속 확대	위탁테스트 실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지원
· 금융위-과기정통부 공동 R&D 지원	R&D 예산집행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핀테크 집중투자 펀드 조성
· 금융보안 레그테크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 레그테크 활용 지원	오픈API 구축 검토
· 전자금융보조업자 관리 강화	공동점검 지원 시스템 구축
· 침해·금융사기 정보공유 고도화	시스템 구축
·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 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개별 오픈 API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권 공동 오픈 API 활성화	참여회사간 협의
· 금융권 EMP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 AI기술 활용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3. 2019년 주요 추진과제

추진 과제	조치계획
· 전자금융업자 건전경영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법 개정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 마련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 검토	개인정보법 관련 협의·검토

4. 장기 추진과제

추진 과제	조치계획
·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연구
· 보험분야 신기술 활용 활성화	제도적 여건 마련